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5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적 필요·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주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해왔음. 충청북도교육청 관할의 학교 또한 학생을 위해 관련 과정의 학급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이 일반고등학교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3조의2(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소질 및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특별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초·중등교육법」 제23조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고시 제2026-1호, 2026.1.21.)」²⁾에서는 일반고등학교에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직업 위탁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① 일반고등학교에 소속 학생을 위한 직업반을 설치하거나, ②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위탁과정을 통한 직업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

1) 「초·중등 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2. 3. 21.]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 2026.1.21)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바) 학교는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직업 위탁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중략~)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위탁 현황('25.4월)>

(단위 : 명)

구분	1) 산업 정보 학교	2) 직업 교육 거점 학교	3) 지자체 설립 운영	4) 한국 폴리텍 대학	5) 공공 기관 지정 운영	6) 전문 대학 연계	7) 노동부 일반고 특화과정			8) 기타	합계
							대한 상의	전문 대학	민간 운영		
인원	1,794	51	7	234	85	0	2	1	6,835	30	9,039
비중	19.8%	0.6%	0.08%	2.6%	0.94%	0	0.02%	0.01%	75.6%	0.33%	100%
							75.6%				

- 1) 산업정보학교 : 고유의 소속학생 없이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만 받아서 교육하는 각종 학교
- 2) 직업교육거점학교 : 특성화고 인적·물적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일반고생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 3) 지자체 설립·운영기관 : 지역 자체 운영기관(예 : (서울) 동부북부기술교육원 (경기) 경기도기술학교 등)
- 4) 한국 폴리텍대학 : 폴리텍 대학에서 교육, 고용노동부 사업비 지급 등
- 5) 공공기관 지정·운영 :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등 공공기관 교육·운영
- 6) 전문대학 연계 : 고교교육혁신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 → '22년 일몰, 일부 사·도는 자체 운영
- 7)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과정 :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 소관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에서 교육, 훈련비 지급

□ 개정안은 현재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일반고등학교에 소속 학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업반과 구분하여, 전문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과정과 같은 형태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일반고등학교에 특별학급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은 물론, 다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채 운영되어 온 일부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및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일반고등학교에 특별학급을 신설·운영할 경우, 이론보다는 실습 교육의 비중이 높은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인프라나 전담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직업교육을 일반고등학교로 분산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담보할 수 없고, 직업계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의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지방교육청 의견을 살펴보면, 충북교육청은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는 만큼 특별학급 설치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경남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에 직업교육 위탁과정 특별학급이 설치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혼란 및 정체성 모호, 직업교육 생태계 파괴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대구교육청, 부산교육청도 일반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적어 이에 따른 전담인력 및 인프라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2